



VISION

생각키움 · 마음올림 ·  
꿈자람 교육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안내

송우통신

2021. 7. 6.

교무실: 543-1311  
행정실: 542-1584  
담당자: 교사 김태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 !!

## 1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제도 도입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제도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접수 즉시(사안 조사 이전) 가해학생은 학교 내 별도의 공간 혹은 가정 등에서 최대 3일간 피해자와 분리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가해자에 대한 긴급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를 말합니다.

## 2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 도입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게 한 제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6.23.자로 변경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즉시분리 및 전문가 의견청취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중 변경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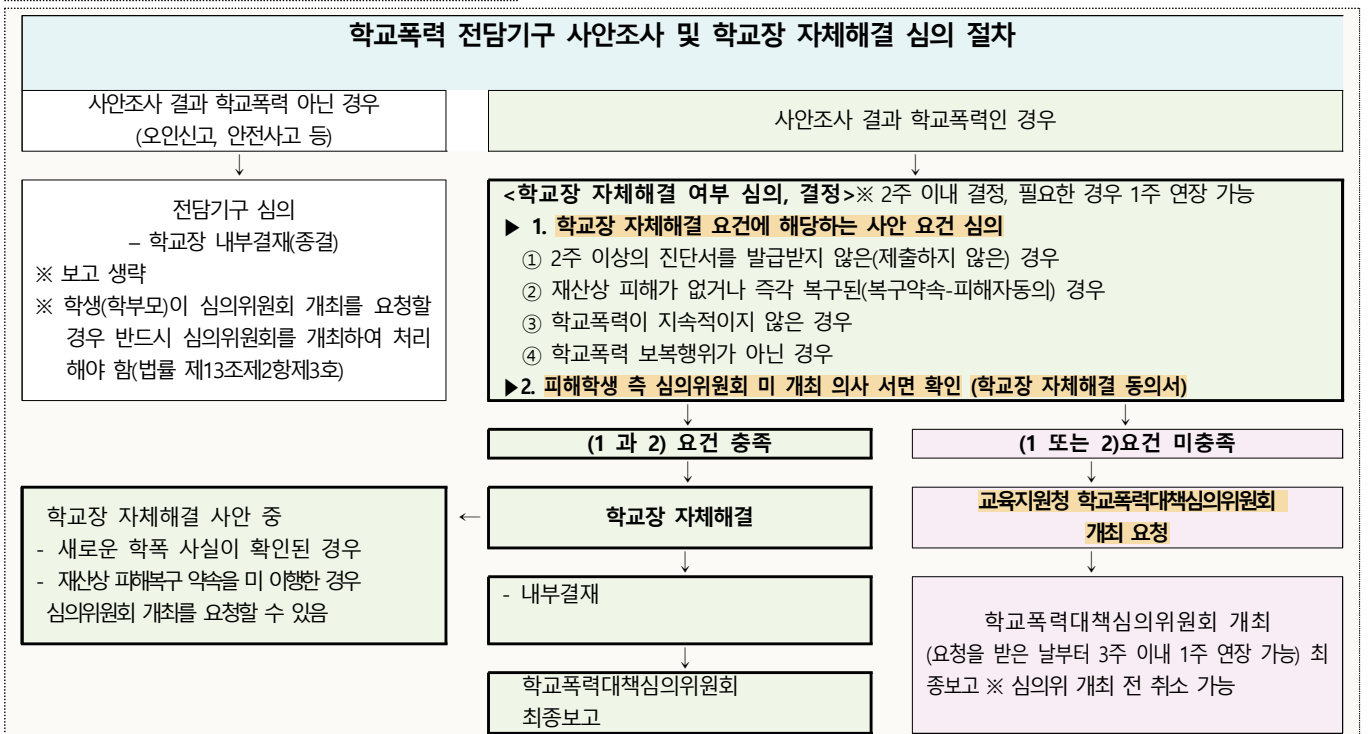
① 학교폭력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②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0.12.22.개정, 2021.6.23.시행)

\* 즉시분리 ('즉시분리' 조치는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이하 '가해자·피해학생'은 '가해 추정자·피해 추정학생'을 의미함)

<b>학교</b>		<b>가해자 즉시분리 의사 확인</b> ○ 가해자 우선 분리 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신고, 발견 등)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이사 등의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분리 보호해야함. [법률 제 16조 1항. 21.6.23.부터 시행] ※학교장 인정결석처리, 최대 3일 이내 ○ 신고 또는 보고, 통보 접수 즉시 접수대장 기록(필수)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는 전담기구(책임교사)에게 신고 ○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실 등에서 신속히 응급조치 ○ 추가 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학생 신속하게 격리 ○ 목격자 등 주변학생의 안전 확보 ※「학생·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사실 그대로 신속히 통보 ○ 통보 내용 등은 기록 유지. 관리 ○ 폭력유형별 초기 대응 ○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기록 유지·학생면담 및 학생확인서 작성 ○ 조사결과 부모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 절차 통보 및 부모 면담 안내 ○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조정(필요시·피·가해측 모두 동의 시)
<b>초기대응</b>	<b>전담기구사안조사</b>	
<b>-가해자 즉시분리 의사 확인</b> - 접수대장기록 - 학생 안전조치 및 학교장 긴급조치 - 학교장 즉시 보고 - 보호자 통보 - 중대사안 유선 보고 - 교육청사안 1차 보고	관계회복 노력 분쟁조정 신청 (양측 원할 시·진행)  <b>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2주 이내)</b> 1주 연장 가능	



\* 즉시 분리 예외

- (제1호)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 '가해학생과의 즉시분리 의사 확인서'에 따라 피해학생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제2호)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따름

\* 즉시 분리 기간

- 최대 3일(72시간) 범위 내에 실시
  - 인지한 당일을 포함하여 최대 3일,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토요일·공휴일 포함)에는 교육활동 시작일로부터 3일  
ex) 토요일에 인지: 월, 화, 수
- 제16조제1항 (피해학생 보호조치 관련) 또는 제17조제4항(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관련)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즉시 분리'는 종료
- '즉시 분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는 경우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등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b>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b> 하는 제도 ▶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 시, 약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의 과정 없이 <b>조기에 교육적인 방식으로 교우관계의 회복을 도모</b> 합니다. (상담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b>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b>	

③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 도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는 심의과정에서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출석 또는 서면)할 수 있고,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제13조제4항)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출석 또는 서면)할 수 있음(제16조의2제2항)

단계	내용
전문가 의견 청취 안내	심의위원회 → 피해학생 측 ○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통지서'(양식1) 발송 ○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확인서'(붙임) 발송 ※ 피해학생 측 의사 확인서 제출 기한은 교육지원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피해학생 측 권리 최대 보장
↓	↓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확인서 제출	피해학생 측 → 심의위원회 ○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확인서'(붙임) 서면제출
↓	↓
전문가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 ○ 전문가 및 의견 청취 방식(출석 또는 서면) 결정 ○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2021. 7. 6.

송 우 초 등 학 교 장